

거창군 공유재산(일반재산) 토지 교환 동의안

의안 번호	2019-88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일자 : 2019. 5. .
제 출 자 : 거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- 가. 김용마을 경로당이 협소하여 마을주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음
- 나. 김용마을의 오랜 숙원사업인 경로당 신축을 위한 부지 확보를 위하여 공유재산과 교환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재산교환 내역

○ 신청인 소유의 재산 표시

종별	재산소재지	지목(종목)	구조	면적(m ²)	비고
토지	거창읍 양평리 333-1	대지	-	83	
건물	“	-	조적조	45.91	

○ 공유재산의 표시

종별	재산소재지	지목(종목)	구조	면적(m ²)	비고
토지	거창읍 양평리 338-6	과수원	-	230	일반재산

나. 추진경과

- 2018. 12. : 폐기물매립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(주차장)후 잔여지로 존치
- 2019. 2. : 잔여지 용도폐지 승인(2019년 제1회 공유재산 심의회)
- 2019. 3. : 공유재산 교환 신청(김용마을회)
- 2019. 4. : 공유재산심의회 재산 교환 승인

다. 향후계획

- 2019. 6. : 감정평가 및 재산 교환

라. 기대효과

- 마을회 소유의 부지 확보로 마을경로당 신축이 가능함
- 경로당 확장을 통한 노인 여가 생활과 복지 향유 공간 확보로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 가능

3. 관련법규 및 조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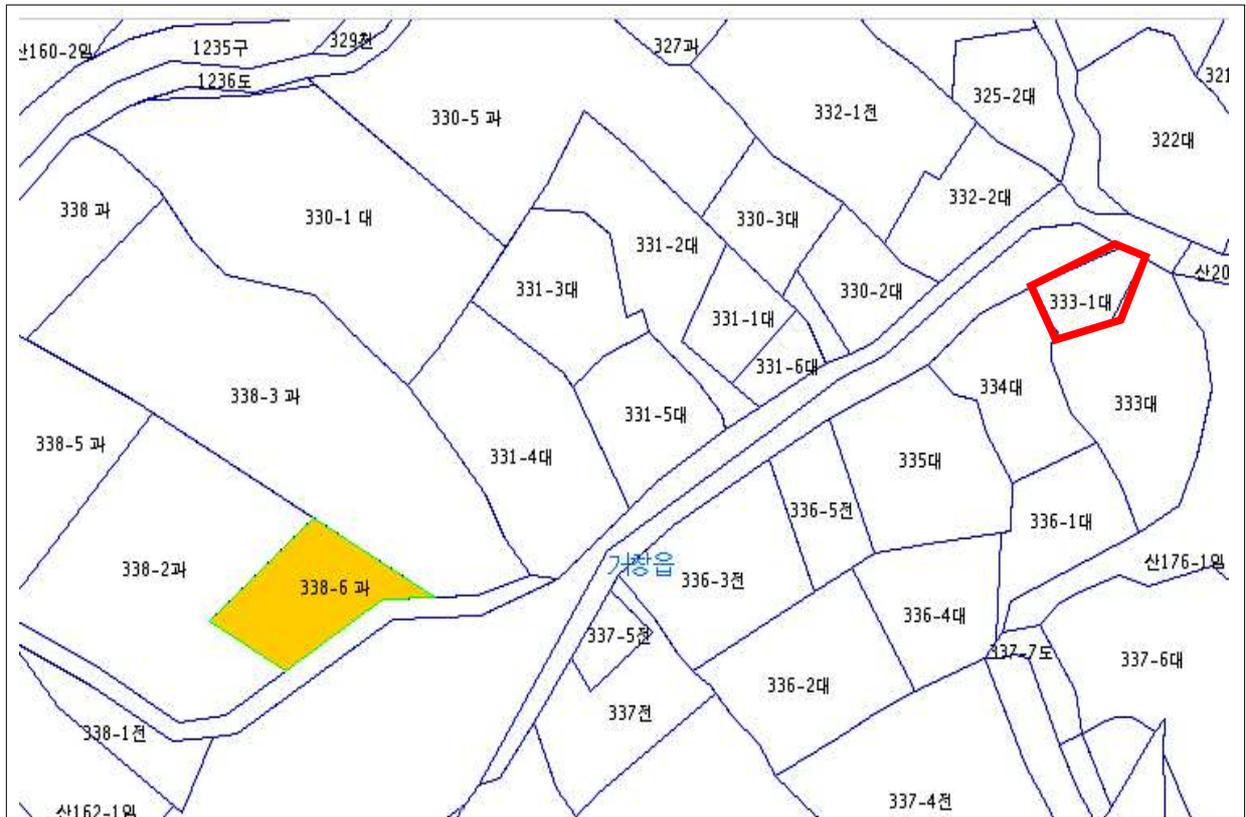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4조

4. 위치도 및 현황사진

가. 위치도



나. 지적도



다. 현장사진(군유 재산 - 토지)



다. 현장사진(마을회 재산 - 토지, 건물)



관 계 법 령(요약)

【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】

제39조(교환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인 토지, 건물,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을 국유재산,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다. 다만,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.

1.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·공공용재산으로 사용하거나 소규모 일반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경우
2.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재산의 가치와 효용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경우로서 매각 등 다른 방법으로 해당 재산의 처분이 곤란한 경우
3.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·공공용재산으로 사용하거나 소규모 일반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하여 교환을 요청한 경우

4.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

- ② 제1항에 따른 교환을 할 때 교환하는 일반재산의 종류·가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에 따라 교환하는 경우 양쪽의 가격이 같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내야 한다.

【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】

제44조(교환) ① 법 제39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교환할 때에는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유사한 재산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재산과 교환하여야 한다.

- ②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환하는 재산 중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 가격의 4분의 3 미만일 때에는 교환을 해서는 아니 된다.